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공동설치)·(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공동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인)
	(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선거사무장)	○○○ (인)
	(○○선거연락소장)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대통령선거에서 시·도선거연락소의 신고는 선거사무장이, 구·시·군 선거연락소의 신고는 선거사무장 또는 시·도선거연락소장이, 정당이 선거연락소를 신고하는 때에는 중앙당, 시·도당 또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의 신고는 선거사무장이 할 수 있습니다.
 4.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공동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6호서식의(나)] (규칙 제26조의2제11항 관련) <개정 2025. 12. 5.>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배우자등)의 (선임) · (공동선임) · (해임) · (교체)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2. 신고내역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직업	(선임) · (공동선임) · (해임) · (교체)	연월일	일련 번호	비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
보조인) · (배우자등)을 (선임) · (공동선임) · (해임) · (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붙임 1.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부
2.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인영신고서 ○매

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인)
	(예비후보자) · (후보자)			○○○ (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사무소에는 그 관할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외에 5명의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더 둘 수 있습니다(선거연락소는 제외함).
2.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3.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 또는 그 상급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신고하는 때에는 선
거연락소장과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그에 대응하는 당부 또는 그 상급당부가, 배우자등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5. "일련번호"란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6.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7.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직업"란에 "정당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
국회의원 ○○○의 보좌관 · 선임비서관 · 비서관",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신고인이 해당 신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선거사무원수 미산입" 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
야 합니다.
9.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다)] (규칙 제26조의2제11항·제28조제3항·제122조제1항 관련)

<개정 2018. 4. 6.>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신 분 명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이 증명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

2. 이 증명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9.5cm

12.5cm

- 주 : 1. “신분명”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의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직계존비속 중 해당 신분을 기재합니다.
2. 이 표지는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선거별·신분별로 구분하도록 색상·모양 또는 크기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3. 상급위원회가 표지를 일괄 제작하는 경우 구·시·군위원회의 표지 발급자의 명의를 상급위원회로 적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라)] (규칙 제26조의2제11항·제28조제5항 관련) <개정 2018. 4. 6.>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 분 명: (직업 :)

나. 성 명:

다. 생년월일(성별):

라. 주 소: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분실자	○	○	○	[인]
	(선임자)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예비후보자)·(후보자)	○	○	○	(인)
	선 거 사 무 장	○	○	○	(인)
	○○선거연락소장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습니다.
2. “신분명”란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직계존비속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
3.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마)] (규칙 제27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9. 5. 30.>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정당선거사무소장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매. 끝.

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표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명을 붙입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과 교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 지>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 영